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18
----------	-------

발의연월일 : 2023. 8. 25.

발의자 : 최혜영 · 임호선 · 정춘숙
김상희 · 홍성국 · 이학영
유기홍 · 신영대 · 김원이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해서는 아니되나, 제조·가공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주체임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능하고, 외화획득용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중 “원료로”를 “원료 또는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 · 포장
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
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의 제조
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 략)

③ ~ ⑨ (생 략)

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